

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38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
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개정이유

급속한 정보화 환경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, 민원서비스시스템 및 인터넷시스템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심의 및 제출시기를 변경함(안 제5조)
- 나.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무정지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4조 제2항)
- 라. 인터넷시스템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4조 제3항)
- 다.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4조 제2항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

- 가.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 공문(경북도 정통 12410-10383호) 사본 1부
- 나. 입법예고결과 1부.

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전년도”를 “당해연도”로, “다음년도”를 “다음다음연도”로, “1월말까지”를 “12월말까지”로 한다.

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국내·외에 시를 홍보하고, 행정정보 및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시민들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4조 제2항중 “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영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개정조례]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</p> <p><생략></p> <p>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<생략></p>	<p>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p>②-----당해연도----- -----다음다음연도-----12 월말까지----- ----- ----- ③<현행과 같음></p>
<p>제24조(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)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, 운영요원,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24조(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) ①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시장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국내·외에 시를 홍보하고, 행정정보 및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시민들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</p>
<p>제34조(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) ①</p> <p><생략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, 주부반,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(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) ①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p>②----- ----- -----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
관인생략
“위대한 경복을 꿈꾸는 300만”

경상북도

우702-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-3 /☎ (053)950-3078 /FAX (053)950-2159
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김장주 사무관 이재섭 담당자 서상김

문서번호 정통 12410-10383

시행일자 2000.06.21 (3년)

공개여부 공개

(경유)

발 름 시장·군수

참 조 정보화업무담당과장

신 임	인정번호	<i>63304</i>	지 시	
전 수	일자	2000. 6. 21	결 재	<i>인정</i> <i>63304</i>
	시간			
	번호			
	처 리 과	정보화업무담당과		
	담 담 자	<i>김장주</i>		
	심사자		심사일	

제 목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

1. 행정자치부 자정 12410-220(2000.3.22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시군에서 제정·시행중인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불일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

3.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·운영과 관련한 표준안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통 일 : 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내용 1부. 끝.

경상북도지사

전경 정보통신담당관 *김장주*

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내용

구분	권고대상 및 분야	권고내용	사유	제고
변경	○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시기 조정	- 도 및 시군의 전년도 시행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촉진시행계획 확정(9월)후,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· 도 : 매년 11월 말까지 · 시군 : 매년 12월 말까지	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 수립 ※ 예산심의시기와 연계	도, 시군
추가	○ 산하기관의 지역 정보화 사업추진 지원	-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산하 기관의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	산하기관에 대한 행정·재정·기술적 지원을 통한 지역정보화활성화	도, 시군
추가	○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 위탁 관련	-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명시	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정보화마인드 확산	도, 시군
변경	○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구성·운영	-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·운영 · 위원수, 외부 참여기관 등	기관별 실정에 맞는 협의회 구성·운영	도, 시군
추가	○ 시설장비 도입 운영	-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무정기(24시간)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	민원서비스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	도, 시군
추가	○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·운영 - 홈페이지 설치·운영 - E-Mail ID보급	-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·운영 관련 근거 추가 ※ 표준안: 별도 통보 예정	인터넷을 통한 정보화환경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 시급	도, 시군

입 범 예 고 결 과

- 조례명 :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예고방법 : 영주시보 제249호(2000년 9월 4일)에 게재
- 예고기간 : 2000년 9월 4일 ~ 2000년 9월 25일(21일간)
- 의견제출여부 : 없음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38호
- 의 안 명 :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정보통신담당관실

2. 제안이유

급속한 정보화 환경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, 민원서비스시스템 및 인터넷시스템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심의 및 제출시기를 변경함(안 제5조)
- 나.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무정지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4조 제2항)
- 다. 인터넷시스템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4조 제3항)
- 라.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34조 제2항)

4. 검토의견

-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5조 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심의 및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
 - “전년도”를 “당해년도”로, “다음년도”를 “다음다음년도”로, 매년 “1월 말”까지를 “12월 말까지”로 개정하고

- 안 제24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 - ② 시장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,
 - ③ 시장은 국내·외에 시를 홍보하고, 행정정보 및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시민들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34조 제2항중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-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현재 시행중인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,
 - 민원서비스의 지속적,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